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파 주 시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제47조1항
3. 공고기간: 2026. 7. 24. ~ 2026. 8. 7.(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관: 파주시청 위생과(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2층)
 - 나. 제출기한: 2026. 8. 7.(금)까지→ 20% 감경 금액 납부 기한

6. 고지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2025년 교육수료증, 휴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붙임의 의견제출서와 함께 **2026. 8.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에 이의가 없어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청 위생과에서 20%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031-940-54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사항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처분사유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알앤씨온	주식회사 알앤씨온 (김*성)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57, 코키아빌딩 502-2호 (목동동)	2025년 위생교육미수료(1차)	과태료부과20만원 →26. 8. 7.(금)까지 <u>납부시 20%감경</u> <u>16만원</u>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알앤씨온	주식회사 알앤씨온 (김*성)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57, 502호(목동동, 코키아빌딩) (목동동)	2025년 위생교육미수료(1차)	과태료부과20만원 →26. 8. 7.(금)까지 <u>납부시 20%감경</u> <u>16만원</u>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와이제이글로벌	오*정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515번길 61, 504 - C35호 (와동동)(와이제이글로벌)	2025년 위생교육미수료(1차)	과태료부과20만원 →26. 8. 7.(금)까지 <u>납부시 20%감경</u> <u>16만원</u>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더케이알앤디	강*영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25, 유은타워7차 9층 919-9호 (야당동)	2025년 위생교육미수료(1차)	과태료부과20만원 →26. 8. 7.(금)까지 <u>납부시 20%감경</u> <u>16만원</u>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홀리데이	안*린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385, 1004호 (목동동)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홀리데이)	2025년 위생교육미수료(2차)	과태료부과40만원 →26. 8. 7.(금)까지 <u>납부시 20%감경</u> <u>32만원</u>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과징금 대체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류 제출(과주세무서 발급)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전화940-5495,팩스940-4439)하시기 바랍니다.